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5. 16.(수)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7년도 2~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8-23-114~224)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7년도 2~4분기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피심인 중 7개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조사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 9월 28일 ‘17년도 1/4분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의결을 하였고, ‘17년 2~4분기에 정부는 224건의 재난방송 요청을 하였습니다. ‘17년 10월, 12월 그리고 ‘18년 1월 30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기별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7년 11월 21일 MBC 등 9개 방송사 15건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고, ‘18년 3월 26일 KBS 등 23개 방송사 89건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난방송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를 알려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여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조사 대상 선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도 2~4분기에 기상청,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총 224건의 재난방송을 방송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방통위 소관 대상 방송사는 KBS 등 중앙 4사와 종편 4개사, 보도전문 채널 2개사, 지역MBC 16개사, 민영방송 10개사, 라디오 14개사, DMB 18개사 등 총 68개 사업자입니다. 재난방송 유형별 요청 내용은 호우경보 101건, 폭염경보 38건 등입니다. 2017년도 2~4분기 월별 재난방송 요청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 KBS 등 36개 방송사업자 222건의 재난방송 의무위반

의심 사례를 방통위에 통보해 왔고, 통보자료에 대한 1차 점검 결과 25개 방송사업자 104건의 재난방송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사실조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재난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소명된 75건, 해당권역 아님 17건, 통보문 누락 및 불충분으로 재난방송 실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26건 등 총 118건을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KBS 등 11개사의 재난방송 미실시 사례 44건과 재난상황이 해제된 이후 방송, 재난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발표 내용대로 방송하지 않은 사례 등 21개 60건을 사실조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방송사별 재난방송 미실시 및 미흡 실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 미실시 사례에 대해 MBC, 기독교방송, YTN, 평화방송 등은 산불·화재·임진강 수위상승 등 사회적 재난의 경우 의무 재난방송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 MBC, SBS, 채널A, 원음방송, 국악방송은 휴일 및 심야시간에 재난방송 요청이 온 경우 제작여건상 재난방송 실시가 어려웠다는 의견을 그리고 KBS, MBC, 국악방송은 재난상황이 신속하게 해제되어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난방송을 미흡하게 실시한 사례에 대해 TBS교통방송, YTN은 재난지역이 많은 경우 포괄적으로 표시했다는 의견을,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경인방송은 심야 및 주말 녹음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 통보문을 수령할 경우 라디오는 다음 날 또는 평일 아침 첫 생방송시간에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 신속·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음방송, 기독교방송, 국악방송, YTN라디오는 ‘재난자막방송 요청’ 통보문은 TV방송에 한정된 내용으로 인식하거나, 라디오 방송과 무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했으며, 국악방송은 재난예방 캠퍼스를 재난방송을 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방송, 불교방송은 개정 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에는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 요약본 전체를 <붙임 3>과 <붙임 4>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자 의견 및 조사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명 및 재난지역과 관련해서 시청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재난명은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보’를 ‘특보’로 방송한 것은 ‘특보’가 ‘주의보’와 ‘경보’를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재난방송으로 인정하고, ‘주의보’를 ‘경보’로 강화하여 대치 발령한 경우 일부 지역은 ‘경보’로 방송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주의보’로 그대로 방송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지역을 “중부 일부”, “곳곳 화재”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나, 지역명을 일부 누락하거나,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역명을 방송한 경우에는 “주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해제 후 재난방송을 실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은 원칙적으로 재난이 끝나기 전에 실시해야 하지만 재난방송 요청을 받고 최대한 긴급하게 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재난상황이 신속하게 끝난 경우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력부족, 녹음방송 등의 사유로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열악한 중소방송사의 방송제작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방송사의 인력부족, 야간 및 주말 녹음방송 등의 사유를 법에서 예외를 인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불명확한 재난방송 요청 사례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요청은 명확하게 해야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함에 따라 라디오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난방송 요청은 재난방송 실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산불·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재난방송 실시 기준표”에 ‘중앙안전대책본부 상황팀장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이라는 주석과 함께 “△” 표시로 되어 있어 자율 사항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일단 마치고 사업자 의견 진술을 듣고 난 후에 추가적인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7개 방송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시켜 주십시오.

(7개사 의견진술인 입장)

지금부터 2017년도 2~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지난 2017년도 2~4분기에 실시한 재난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점검하던 중 일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실시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위반 의심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재난방송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2분기, 올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3~4분기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해당 사업자의 소명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종적으로 재난방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과태료 처분 당사자인 (재)국악방송, (주)경인방송, (주)와이티엔라디오, (재)원음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한국디엠비(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재)국악방송 사장이신 송혜진 님 맞습니까?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주)경인방송 사장이신 권혁철 님 맞습니까?

○ 권혁철 (주)경인방송 대표이사 사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주)와이티엔라디오 대표 대행이신 김호성 님 맞습니까?

○ 김호성 (주)와이티엔라디오 대표 대행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재)원음방송 라디오국장이신 박종훈 님 맞습니까?
- 박종훈 (재)원음방송 라디오국장
 - 박종훈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재)기독교방송 미디어본부장이신 손근필 님 맞습니까?
- 손근필 (재)기독교방송 미디어본부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재)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장이신 최윤희 님 맞습니까?
- 최윤희 (재)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한국디엠비(주) 미디어사업본부장이신 안현희 님 맞습니까?
- 안현희 한국디엠비(주) 미디어사업본부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럼 먼저, (재)국악방송, (주)경인방송, (주)와이티엔라디오, (재)원음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한국디엠비(주)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께서 이번 과태료(안)과 관련해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국악방송 사장이신 송혜진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출석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악방송은 보도·시사·해설 없이 24시간 동안 국악을 송출하고 있는 전문라디오방송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자막처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전 직원이 6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이어서 새벽 및 심야, 주말에는 엔지니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방송이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재난방송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이 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캠페인으로 대체를 해도 좋다는 의미의 의논이 있었고, 이후 재난방송 캠페인을 강화해서 1일 4회 정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난방송

이후 캠페인에 대한 보고를 할 때도 아무런 지적 없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재난방송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다음 날 방송하는 것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재난방송 캠페인으로 대체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최종적으로 12건을 지적받게 되었는데 모두 다 취약시간대에 있었던 재난방송 미실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건으로 카운트되었는데 역시 녹음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3건이건 10건이건 모두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접 시간대에 있었던 재난방송 미실시를 3건 혹은 6건 이렇게 부과하셨는데 이것을 인접시간대의 것을 1건으로 해석해 주실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성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방법 시행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빠듯한 국고예산으로 운영되는 영세 방송국의 한계를 고려하셔서 과태료의 부담을 줄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경인방송 권혁철 사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 권혁철 (주)경인방송 대표이사 사장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난방송 미실시로 해서 이 자리에 제가 두 번째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한번 나와서 진술드렸는데 그때 제가 나와서 ‘재난방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은 제가 경인방송 사장 노릇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9월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였구나!’ 깊이 깨닫고 돌아간 즉시 경인방송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이른바 자동 음성송출시스템인 TTS 시스템도 설치하고 지난해 9월 이후로 경인방송은 올해 5월에 이르기까지 단 1건의 재난방송 누락사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줬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잘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진술에 이르게 된 재난방송 미실시 건은 그 9월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1/4분기, 2~4분기 나누어져서. 사실은 제가 또 다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서 대단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억울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경각심을 준 적이 없었는데 효율적인 경각심을 고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너 또 그랬으니까 또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정말 시킨 대로 잘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라는 것이 계도기간도 있고 잘하라는 취지로 하는데 자꾸 벌만 주려고 하면 괜한 말씀입니다만 반발심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는 방송사마다 체급이 다릅니다.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지상파 거대 방송사와 저희 같은 규모는 매출액 규모로 100분의 1, 200분의 1 수준인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매겨지는지, 이것은 심각하게 부당한 일 아닌가? 매를 맞아도 체급에 따라 다르게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재난방송 진술하게 됐습니다만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지를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경각심 고취와 계도를 통해 앞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호성 ㈜와이티엔라디오 대표 대행님 발언해 주시지요.

○ 김호성 ㈜와이티엔라디오 대표 대행

- 안녕하십니까? YTN 사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호성입니다. 저희 회사가 사장 이슈 문제로 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라디오 업무까지 대행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8월 3일 폭염경보 발령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을 경보상태가 나와 있었는데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했는데 폭염경보가 발령된 전국의 도시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청권, 저희가 방송구역으로 허가받은 곳 몇 군데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부 진행자가 진행하는 <당신의 전성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몇 군데 폭염경보가 발령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폭염이 발생했을 때, 경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드신 분은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안내방송까지 비교적 성의껏 방송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안산, 강화, 의정부 3개 지역이 저희의 방송허가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곳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의 해당지역을 이야기 하면서 ‘등’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폭염경보에 대한 해당지역 세 군데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사안은 지난해 발생했던 사안이었고, 적용되는 것은 올해 1월 2일부터 방통위 고시로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이 사안의 기간을 저희가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꼭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24시간 뉴스전문채널로서 그리고 자회사로 있는 라디오방송으로서 앞으로도 이런 재난과 관련된 방송이 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디오에 온지 얼마 안 됩니다. 와 보니까 YTN 본체 경영사이즈의 30분의 1 정도 수준이어서 이것이 TV 본사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라디오에 와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생각보다 피부에 와 닿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에 와서 노력봉사를 해서라도 과태료 부분을 최저로 경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훈 (재)원음방송 라디오국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 박종훈 (재)원음방송 라디오국장

- 의견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인방송 대표님 ‘경각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와 닿고, 또 국악방송 대표님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녹음방송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표현도 와 닿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작비가 한 달에 얼마 드는지 방통위에도 다 자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원음방송은 중소방송국 중에서도 소방송국에 속합니다.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큰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저도 라디오 제작만 한지 22년차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재난방송이 소중한지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방통위에서 아마 일벌백계일지, 한번 경각심을 크게 주자는

의미로 이번에 과태료 부분, 또 개정된 법률안을 다시 공지해 주고 그런 식의 행동을 보여 주셨는데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도 지금 적은 제작비 안에서 바로 인력 프리랜서를 투입해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TS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타이핑해야 하고 또 그 누군가가 24시간 대기하는 엔지니어가 됐을 때 엔지니어가 실수를 해서 핑크가 났을 때 그 실수 부담은 엔지니어가 지려고 하지 않겠지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소방송국들이 처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다만 이 말씀은 부탁드립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예전의 민방위 훈련에서 KBS 주관방송사에서 강제로 끊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그런 예를 드셨지요? 이번의 폭우 같은 경우 작년에 1분마다 재난 방송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끊고 1분 또 방송하고 또 방송하다 끊고 이런 식의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는 30개 지역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걸렸는데 30개 지역을 다 멘트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 전역'이라고 했다는 식의 표현, 이런 식의 상식적으로 수궁이 가는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 저희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못 됐던 부분은 방통위에서 크게 큰 마인드로 커버해 주신다면 추후에 또 공중파방송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필 하는 (재)기독교방송 미디어본부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 손근필 (재)기독교방송 미디어본부장

- 먼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에서 라디오방송사 대표들이 라디오방송사의 취약성에 대해서 다 호소드렸습지만 저희 CBS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CBS가 지적을 받은 것이 3건입니다. 7월 23일인데 이날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왔던 날입니다. 중부지역에 비가 가장 많이 와서 저희 CBS는 그날 15번 호우와 관련된 특보를 방송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 종합뉴스까지 15번,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다시 했는데 15건 했고 그 원고들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노컷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날 노컷뉴스를 통해 11건이나 모든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5시간에 걸쳐 11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보 사항들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기자들 현장에 파견해서 현장상황들을 전하는 사진 기사들도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23일 하루 종일 CBS가 방송한 노컷뉴스까지 포함해서 15건, 11건 총 26건의 기사를 이날 호우특보를 방송했습니다. 아까 여러 대표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실히 방송했는데, 다만 한 가지 서울경기 일원의 이런 재난상황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니까 심지어 시·군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날 현재 지역별 차량통제구간 그리고 지하철 운행중단 상황, 지역별 누적 강수량 그리고 기상청에서 특별히 주의시키는 것까지 다 방송을 하나하나 매 시간 15분에 걸쳐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지역명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을 안 것이 대체로 3/4분기나 4/4분기 정도, 또는 올해 정도 이것이 강화됐다는 것,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7월 23일 현재는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하는 기상특보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고 더 정확하게 성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운 것은 과태료도 두렵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무려 26번의 당일 현장까지 취재하면서 방송하고 기사를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방송을 소홀히 한 방송사라는 오명이 오히려 저는 과태료보다도 더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이 맡긴 전파, 공기로서의 역할, 맡겨진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윤희 (재)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 최윤희 (재)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장

- BBS 불교방송입니다. 먼저 저 역시도 BBS 불교방송의 입장을 이렇게 소명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불교방송 역시 22시간 종교방송을 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라디오방송사입니다. 불교방송의 경우 2017년도 1월에 개정된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재난방송에 관련한 것을 성실히 준수하던 중 저희는 7월 16일 일요일 새벽 5시 23분 홍수주의보 재난방송에 대한 미실시 건으로 1건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라디오방송사처럼 저희 역시도 일과시간이 아닌 새벽과 심야시간에는 녹음방송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입장이었고, 주조정실에 엔지니어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새벽 5시 23분에 온 재난방송에 대한 대처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난방송시스템은 PD와 기자와 아나운서가 같이 편성부의 승인 하에 방송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놓친 방송을 녹음방송 중에 편성하기 위해 일요일이었고 전화가 오고가고 논의하던 중에 1시간여 후 그 홍수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었는데 이것을 녹음방송을 깨고 재난방송 긴급방송을 편성해야 하는지 논의 끝에 넘어가고 대신 실시간 인터넷 기사로 게재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방송에는 일단 미실시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이후에 그날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왔었고, 홍수주의보 새벽의 건은 놓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효되었던 기상특보 사항, 호우주의보 사항은 오후 5시 뉴스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어쨌든 새벽에 재난방송을 저희가 놓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교방송 역시 인력과 장비,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방송을 하고자 했으나 역시 미흡했습니다. 다만, 저희 역시도 여러 가지 상황상 취약시간대의 재난방송을 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점을 감안해서 그 후에는 저희 회사도 TTS 단말기를 도입해서 직접 방송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저희 역시도 성실히 수행하던 중 그 1건으로 인해 재난방송에 대해서 부족한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사가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봐 그것 역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제에 불교방송 역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방송 미실시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방송사의 상황을 감안해서 경감 처분할 수 있었으면 하고 선처를 말씀드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디엠비(주) 안현희 미디어사업본부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 **안현희 한국디엠비㈜ 미디어사업본부장**

- 저희는 2017년 7월 3일 새벽 2시에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홍수주의보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송출하면서 홍수경보로 오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방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거나 태만해서 벌어진 건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워낙 DMB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새벽이나 주조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하다가 수동으로 하고 있고, 이 날 상황을 보면 새벽 2시에 벌어진 일인데 자정부터 4건 정도가 홍수경보가 계속 오게 됩니다. 경보를 반복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주의보로 오게 되니까 그때 1명이 있다 보니까 실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상 지금 현재 시스템 부분 그리고 1명이 근무한다는 점 정상참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실수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DMB 쪽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의 그 구축비용이 사실은 저희 주 수익원인 광고매출액 두 달 분 정도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계속 맡기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올해 안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난방송 의무매체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그 외에도 행안부 소속의 '안전한TV' 쪽과도 이야기해서 재난방송에 관련해서 좀 더 경각심을 하기 위해 5분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번 달부터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저희 실수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저희도 어느 식으로든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저희가 처음 했다는 부분 그리고 미실시가 아니라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처분에 있어서 어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본 과태료 처분 건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저에게 의사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경인방송에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1건도 지적받은 바가 없다고 하셨지요?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사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 시스템 도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사장**

- 비용이 몇 만원 단위인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경인방송이 1,000만원 들었습니다.

○ 권혁철 (주)경인방송 대표이사 사장

- 1,000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십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파악해 봤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국악방송은 그 이후에 TTS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즉시 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지난 9월 말 이후에 바로요?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그 이후 전에는 국악방송도 적발된 건이 없고….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주로 2분기와 3분기에 다 집중된 사안이지요?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국악방송은 장비 도입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저희는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국악방송이 대당 660만원 해서 3대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 권혁철 (주)경인방송 대표이사 사장

- 국악방송이 2,000만원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1,000만원입니까?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왜냐하면 저희는 지역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 허 욱 부위원장

- 어떤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해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작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방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작년에 1분기에 대해서 한번 처리했습니다. 지금 2분기, 3분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TTS 자동화 시스템을 대부분 도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적을 것입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특히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 방송을 중간에 끊고 직접 읽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청취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라디오방송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DMB 빼고는 다 라디오방송인데 대체로 애로사항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야·야간에 또 녹음상황으로 주로 인력 사정 때문에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재난방송 속보를 처리하기에는 녹음방송이 틀어놓고 녹음기로 나가니까 어렵다는 말씀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송을 맡고 계시면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익성, 공공성, 공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예산이 들더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안 된다, 야간·심야에 녹음방송이었다, 또는 휴일이었다고 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라디오방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해 나갈 텐데 우선 그런 인식을 한번 제대로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보니까 캠페인방송을 하면 이것으로 대체되는 줄 알았다, 그것은 제가 방통위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데 캠페인 방송을 하면 그것으로 양해가 된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 강화된다는 교육이 있었고 저희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고 의논을 드리니까 당시 방통위 소속에 계시던 모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캠페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까?”라고 질의하자 “그럴 수 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2016년 1·2분기 국회 요구 자료가 있었을 때에도 캠페인으로 대체한 자료를 냈으나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재난방송 미실시하게 된 상황에서는 캠페인 보호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만약에 그 캠페인이 안 된다고 했으면 녹음방송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을 최대한 빨리 그것을 직원이 가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을 텐데 캠페인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마저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1분기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캠페인 방송을 하면 재난방송을 면해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런 생각하셨더라도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니더라도 판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처에서 그런 답변을 했을 리는 없지만 잘못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난방송은 엄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열악한 인력 사정, 또 심야에 녹음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술 나오신 분들도 DMB만 빼고 다 라디오 쪽입니다. 사실 TV방송은 밑에 홀릴 자막으로 처리하면 그뿐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반건수가 없습니다. 라디오는 위반건수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심야에 호우정보, 홍수주의보, 경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엄중하게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진술 나오셨으니까 특히 국악방송 같은 경우 10건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까 1건으로 인접시간대에 계속 걸린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정말 애로사항, 이것은 이번에 제도 개선에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송혜진 (재)국악방송 사장

- 우선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난방송 고지가 오는 대로 TTS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상당히 긴 경우에는 음악을 한 곡 다 듣는 정도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질도 그렇게 훌륭한 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용을 음성파일로 해서 즉시 보내주시면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방송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리고 청취자들이 불편 없이 재난방송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 건의사항 있습니까?

○ 박종훈 (재)원음방송 라디오국장

- 원음방송 박종훈입니다. 국악방송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사실 재난 방송 관련해서 6개월 가깝게 엔지니어들과,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숙제가 있어서 6개월 정도, 특히 방통위에 계신 분들과 상의도 하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가장 심플한 것은 각사에서 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통위나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들을 녹음파일로, 오디오파일로 딱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멘트가 나가는 순간에 라디오 할 때 음악 나갈 때는 중간에 끊고 가도 괜찮습니다. 라이브 때도 충분히 5분, 10분 안쪽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TTS는 글자로 변환되어야 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녹음된 음성 오디오파일로 제공해 주시면 방송국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바로바로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을까, 또 통일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 김호성 ㈜와이티엔라디오 대표 대행

- YTN라디오 김호성입니다. 저도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 YTN TV가 있고 YTN라디오가 있는데 별도의 자회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나 MBC, SBS 같은 TV와 라디오 겸영을 하는 방송사의 경우에는 TV 재난방송 관련 경보사항을 자막으로 스크롤로 내보내면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8월에 이번에 지적을 받은 사안도 스크롤로 TV를 통해 나갔는데 그 내용이 라디오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25개 해당 지역 가운데 4개를 언급하면서 ‘등’으로 했는데 그중 세 군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TV에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라디오와 TV를 겸영하는 언론사에서 한 곳에서 스크롤로 하는 것을 방송한 것으로 갈음해 주신다면 사실 YTN라디오는 이번에 커다란 귀책사유가 안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매체가 다른데 TV에서 나갔기 때문에 라디오는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TV에 나간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와이티엔라디오 대표 대행

- 소홀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같은 동시간대 TV에 나갔는데 언급하는 과정에서 25개를 다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지역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대피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런데 '등'으로 해서 안 되지요. 꼬박 꼬박 언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와이티엔라디오 대표 대행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겸영사의 경우에는 TV에서 하면 라디오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라디오가 자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TN TV나 YTN라디오나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시청자와 청취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TV 보는 사람이 라디오 동시에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논쟁할 필요가 없으시고, 우리 사무처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좀 더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와이티엔라디오 대표 대행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송 현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열악한 또 규모가 작은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 더 어려움이 많지요. 특히 전문편성을 하고 있는 쪽 어려움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방송을 왜 하십니까? 주파수를 배정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방송을 하는 것은 시청자나 청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나 청취자는 국민입니다. 재난방송이라는 것은 유사 시 그야말로 재난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열 사람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반드시 청취하고 텔레비전도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방송이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어려움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취자가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그 재난방송을 듣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파수를 배정받아서 허가받은 방송의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누누이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정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히려 방송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거꾸로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방송하실 때 다 청취자를 위해 우리가 방송한다고 하실 텐데 똑같습니다. 재난 방송,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가 이 방송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대표님, 경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큰 사업자와 체급이 다른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호위반하면 조그마한 차가 위반 하나 큰 차가 위반하나 범칙금은 똑같습니다. 어려움은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정부

기관으로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하면 저희들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난방송을 발령하는 발령청에 대해서도 이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런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 점대로 이행하시고 또 방송 사업을 이왕 허가받아서 하시는 가운데에서는 이 부분은 엄격하게 또 굉장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고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료요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술인들께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지요.

○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사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가슴 깊이 잘 새겨듣고 다짐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진술하러 나오신 분들이 다 고만고만한 중소방송사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방송환경이 그전보다는 많이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 수익구조들이 열악해진 것은 다들 공지의 사실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9월에 왔을 때 1차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경감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송 사업자들이 이렇게 앞으로 잘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지고 새겼는데 이번에 2~4분기 건은 생각치도 않았던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처벌받은 사가 이런 제안을 하면 우습겠지만 2~4분기 건은 1차 서면결과에 대해서도 각사별로 이유가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는 몇 건 중 몇 건이 없어지고, 몇 건 중 몇 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형평이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절반씩 감해 주시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 10건 위반했으면 5건 그다음에 금액도 절반으로 해서 전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잘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진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견진술인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견진술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난방송 실시 위반 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개사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의결안건 가>에 대한 검토의견 및 과태료 부과(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 **곽영환 법률자문관**

- 위원장님, 의견진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려해야 할 법률적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이효성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곽영환 법률자문관**

- 원래 1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동종의 질서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이것을 각 위반행위마다 하나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봐서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동종의 질서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었지만 그 반복된 행위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근접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위반행위 의사가 동일하고 또 침해된 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것을 포괄해서 하나의 위반행위로 봐서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돌아와 본다면 지금 국악방송, 원음방송, 경인방송, 기독교방송 다 포함되는데 하나의 예만 들어도 국악방송의 위반행위를 보면 2017년 7월 2일 23시 22분에 위반행위가 하나 있었고, 같은 날 같은 시 23시 58분에 역시 호우경보 대치에 의한 발표, 같은 동종입니다. 불과 36분 사이에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물론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전혀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을 여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고려한다면 위반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반한 것을 가지고 좋아서 벌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온 방송사들이 대개 라디오방송사이고 경영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것을 동일행위로 취급할 수 있다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저희가 준비한 안건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은 재난 예방·대피·구조·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은 방송사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방송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아직 제재를 시행하는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재난방송을 미흡하게 실시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넓게 인정하여 처벌보다 “주의” 조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자문단에서 주의를 권고한 재난명·재난지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사례 중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 재난상황이 해제된 이후지만 최대한 긴급하게 방송한 경우, 경보 대치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보로 방송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문단 의견을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재난방송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그 원인이 되는 행정청의 요청사항이나 근거규정이 명확해야 하므로 라디오 방송사에게 “재난자막방송” 문구로 재난방송을 요청한 경우는 재난방송 실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산불·화재·임진강 수위상승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관련 실시기준이 재난방송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의”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 녹음방송, 인력·예산부족 등을 제시한 것은 재난방송 실시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그밖에 재난명 및 재난지역에 관해서 구체성이 없는 방송을 송출한 경우는 재난방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사업자별 위반내역입니다. 조사대상 104건 중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난방송 실시 사실을 소명한 MBC 등 11개 방송사 15건은 재난방송 실시를 인정하고, 기독교방송, 원음방송, 국악방송, YTN라디오 등 라디오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한 8건은 “불명확한 재난방송요청”으로 재난방송 실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MBC, SBS, EBS, YTN, 춘천MBC,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국악방송 등이 산불·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난방송을 위반하였다고 지적된 20건은 재난방송 실시기준이 재난방송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주의” 조치하고, MBC, SBS, YTN, 기독교방송 등 12개 방송사 25건은 ‘지역명 일부 누락, 인식 가능한 범위의 지역 포괄’ 등 재난방송 내용이 일부 미흡하지만 그 위반 수준이 미미하여 “주의”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 MBC, SBS, 채널A,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원음방송, 경인방송, 국악방송, YTN라디오, 한국디엠비 등 10개사 23건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난명 및 재난지역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재난방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외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13건에 대해서도 재난방송 의무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방송사업자별 위반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미실시 및 미흡실시 판단 36건은 재난주관기관의 발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방송으로서 재난방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과태료)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에 따라 <붙임 2>의 위반내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는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붙임 1>을 한번 보시면 방송사별 위반건수와 건수당 과태료 금액을 기준금액인 1,500만원으로 산정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 <표>를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 필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막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TV와 달리 라디오의 경우 음성으로 방송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요청 문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난지역이 많은 경우 라디오방송은 모든 지역을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취자의 청취권도 고려하면서 재난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지역을 포괄적인 표현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편성 라디오방송사의 경우 재난방송 실시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과태료 부과(안)를 의결해 주시면 고지서 발급절차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까 법률자문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한다면 1건씩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복수 안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건으로 또는 몇 건으로 줄여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 들여다보셨습니까?

○ 광영환 법률자문관

- 지금 <붙임 2> 위반 내역을 보시면 위반날짜, 일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료만으로도 요청된 재난방송이 나와서 대강 어떤 법이 침해됐고 같은 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법률자문관님과 상의를 하셔서 같이 검토하시면서 1건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 등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지요.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법률자문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잠깐 보충 설명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7월 2일 일요일 심야와 7월 16일 일요일 심야, 그리고 7월 23일 오전 상황입니다. 세 날짜에 위반상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7월 2일 23시 22분에 인천광역시 양평군에 대해서 호우경보 대치 1건이 발령되었습니다. 23시 58분에 서울,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그리고 40여분 후에 날짜가 바뀌어서 0시 42분에 의정부 고양, 새벽 3시 50분 포천시, 4시 30분 세종, 청주, 괴산, 이렇게 비구름이 옮겨 다니면서 시간대별로 지역에 대한 호우경보 대치가 계속 발령되는 상황입니다. 자문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하루 저녁에 6건이 위반되거나 4건이 위반되거나 3건이 위반되었다고 3건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것을 1건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7월 16일도 02시 43분, 03시 32분, 04시 52분, 05시 24분, 06시 31분 이렇게 계속 시간대별로 경보가 이어졌었고, 7월 23일도 이때는 아침입니다. 아침 08시 22분, 09시 24분, 09시 49분, 10시 40분, 11시 29분, 13시 19분 등 이렇게 기상상황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발령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까 진술인들이 진술한 내용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자문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법리적으로도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논의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실무진에서 보고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별 건입니다. 지역이 다른데 그것을 동일 사안으로 본다는 것, 일련의 흐름으로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위원장님께서 재검토하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검토하시되, 재난지역이 달라진 것은 엄

연히 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다른 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왕 발언기회를 얻었으니까, 아까 의견을 제시하러 오신 분들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1분기 건을 다루고, 지금 2분기에서 4분기 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야말로 저희들이 제4기 방통위가 들어서서 9월에 처음으로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고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처 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처분하는 2분기 건, 이런 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분기 건으로 처분을 한번 더 받았는데 이번에 2분기 건으로 또 받으면 그것은 경감사유가 결국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지를 가지고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정책목표, 재난방송을 보다 분명히 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목표를 둔다면 이와 같이 시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이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대체적으로 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차로 보면 5분, 10 몇 분 이렇게 간격은 있습니다만 지역이 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이 다르고, 또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건으로, 단일 건으로 묶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선 법률자문관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재난방송관리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1/4분기 재난방송 미 실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제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앞서 또 출석한 사업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어보면 제제한 뒤로 대부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었습니다. 팀장님, 시스템 갖춘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재난방송 미 실시 사례가 경감했습니까?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오늘 보고드린 <붙임 2>를 보시면 날짜별로 9월 이후로 위반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갖춘 곳은 명확히 없고,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방송사들도 작년 9월 이후로는 위반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제재했던 시점 이후 만약에 동일한 재난방송 미 실시에 대해 소홀했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가중해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그 이전의 위반 사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때보다도 재난관리주체인 행정청에서 나가야 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라디오방송에 자막방송을 요청하는 불명확한 재난방송 요청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실시요건에 해당 안 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실시기준이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재난을 관리하는 행정청 자체가 재난방송을 요청할 때는 그 요건이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형태나 재난지역들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개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포괄적

으로 해도 한 것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전 검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모든 방송사들에 대해서 특히 특수방송, 국악방송이나 종교방송 이런 데 대해서까지 과연 재난방송을 다 일괄적으로 요구할 것이냐, 재난의 강약, 경중과 상관없이 동일한 재난방송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감사유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재난관리를 하는 주체에서, 즉 재난관리청에서 방송사들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의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법률자문관계서 하신 말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날 밤에 심야부터 새벽으로 이어지면서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계속 경보가 지역에 따라, 비구름이 이동하니까 지역이 물론 달라지지요. 그것을 녹음방송이고 또 심야에 근무자가 없이 엔지니어 하나만 녹음방송을 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은 1건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정밀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구름대 잘못이지, 방송사가 일부러 고의로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감할 수 있는 것은 경감하자는 쪽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열악한 사정, 그다음에 라디오 매체의 특성 등 우리가 사업자의 고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가뜰이나 경영이 어렵고 또 취약한 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줄망정 무조건 건당 1,5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사업자 앞에서 이야기는 못 했지만 국악방송 같은 경우 특수목적 방송인데 고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악방송을 방송하는 곳에서도 재난방송 자막을 또는 속보를 계속 해야 하느냐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2건 제일 많습니다. 심야에 녹음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엔지니어 1명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1억 8,000만원이나 우리가 과태료를 만약에 매긴다면 건수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악방송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주의사항이 아까 역시 국악방송에서 나왔는데 “캠페인방송을 하면 봐 준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송사를 벌일 태세인데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못 전달이 되면 사업자는 여기를 믿고 ‘안 해도 되나보다’ 그것은 명백히 사무처의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대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부분 심야, 새벽에 또는 휴일에 근무자 없이 엔지니어가 녹음방송을 트는데 심지어는 메이저방송들도 휴일 날 심야에 다 녹음방송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도 그렇게 녹음방송을 킵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 왔을 때 재난 당국에서 녹음파일을 만들어서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파일 걸기만 하면 그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자가 필요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니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제 재난당국과 재난방송협의회를 합니까? 9월입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6월이 곧 다가오니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사업자 의견도 반영하고, 취약매체의 사정도 헤아려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난 당국에서 처음에 최초 발령을 낼 때 라디오와 TV의 매체 특성에 맞게끔 속보를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빼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되풀이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고생스럽겠지만 잘 다듬어서 매체 특성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난당국 기상청, 행안부, 안전처 이런 곳에서 문안 만드는 것이 방송의 특성에 맞게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련되게 요지를 딱 정해서 가급적이면 방송에 부담 주지 않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런 전문가를 앓히든가, 속보 문안을 만들 때 거기에 전문가 감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문가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안 지켰다고, 문안을 토씨 하나 틀렸다고 위반했다고 1,500만원 과태료 매긴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장 6월 협의회가 다가오니깐 잘 들여다보시고 음성파일도 적극 검토하십시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저는 보려고 하는 것이 지난 2분기, 3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17년 1분기의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9월 말에 했습니다. 9월 28일이니까 그 이후에 즉 4분기에 이루어진 위반건수는 경미한 것이지요?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4/4분기 건은 없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 과태료를 부과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 즉 재난사태에 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방송사들이 모르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4분기에 나타난 것이고, 또 올해 들어 와서도 국악방송 까지도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각 방송사들의 개선노력의 의지나 행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국 시기적인 미스매치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이후 그 중간에 사업자들은 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개선 노력 이전의 적발사항들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벌을

위반했다고 처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 즉 재난방송에 관련해서 재난명, 또 재난지역을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으로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라디오 매체가 가진 특성을 잘 반영해서 재난방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방송사들을 점검해서 작년 4분기 이후에 제도적 개선을 해서 혹은 기기를 설치해서 잘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수동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재난방송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을 법률자문관께서 이야기한 대로 전체 건을 묶을 것은 묶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치로 50% 안에서 감경해서 우리가 의결한다고 하여도 각 방송사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외에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들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악방송 같은 경우 위반건수가 굉장히 많고, 방송 자체가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운 방송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로 해서 또 녹음방송을 한다고 해서 처분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또 방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수행하면서 처분했던 것이 9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 2분기에 발생했던 것, 그러니까 시차 때문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녹음방송이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경감해 주는 것은, 또는 달리 처분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음방송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청취자, 불특정 다수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재난방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난방송에 관한 것은 발령청이나 이를 전달하는 매체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국민들 3자가 모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아까 법률자문관님께서 말씀하신 복수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건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또 재난방송 당국에도 라디오 방송사에게는 재난내용을 녹음파일로 만들어서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8-23-225)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2015년 4월 29일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24일에는 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 보시겠습니다. 재허가 대상입니다. 올해 연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개사, 12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는 11개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TBN 방송국과 국악방송이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심사방안에 따라 운영할 방침입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와 공익성 실현 여부 등 기존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시청자 의견청취, 사업자 제출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로는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침입니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무 심사위원회 구성(안)으로는 총 아홉 분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미디어 분야와 법률 분야, 기술 분야, 시청자·소비자 분야로 다양한 분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허가 여부와 재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세분화한 심사기준 및 그 배점을 결정하고,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사사항 및 배점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며,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

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고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5월 말에 재허가 신청 공고를 하고,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시청자 의견 접수와 기술 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10월에서 11월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11월까지의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붙임>으로는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금까지 쪽 해 왔던 재허가 계획에서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작년에 심사한 사업자와 동일한 운영방침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해당 두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50점이 더 추가된 것이지요? 정식으로 재난방송 항목이 들어간 것이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3년 전에 했던 것보다 50점이 추가되는데 결국 환산해서 1,000점 만점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물론 1,000점으로 맞추는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아까 피심인 의견 들었던 국악방송이 재난방송을 다시 심사를 받게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기본계획만 오늘 끝냈으니까 세부계획은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항목과 중분류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저도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일정에 따라 잘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재허가 대상이 TBN과 국악방송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특수목적 라디오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이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심사위원들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심사위원장과 상의해서 잘 수행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감안해서 엄정하게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5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06분 폐회 】